



예명조우 상업비밀침해죄 사건

45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3)深中法知刑终字第44号
판결 일자	2014년 1월 23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상업비밀침해죄 성립)
공소기관	선전시 롱강구 인민검찰원		
피고인(상소인)	예명조우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225조,		
영업비밀	풍력기, 증기 가열기, 고급 모피 가공기 부품의 구체적인 구조, 치수, 오차 한계, 재료, 규격 및 기술요건 등		
키워드 (Keyword)	설계도(图纸), 합자회사(合资公司), 허가 사용료(许可使用费)		

02 사건 개요

피고인 예명조우(기술서비스부 설치 테스트 담당)와 라오모(제8설계실 설계사, 다른 사건으로 처리)는 모두 XX 오염정화 기계 유한공사(이하 'XX공사')직원이고, 비밀보호 의무조항이 들어있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8년 8월 예명조우와 라오모는 선전과 짜양수 우씨에서 XX기계 공사 총경리 판모중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류기를 개발하기로 협의하고, 라오모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XX공사 기술비밀인 기구기 등 관련 기계의 설계도를 복제하여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담아 반출하였다.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기류기를 생산하였다.

2012년 3월 23일 라오모는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공안사법 감정센터에서 라오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설계도와 XX공사 설계도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감정하였다. 2012년 7월 4일 예명조우가 체포당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 예명조우에게 상업비밀침해죄를 인정하였다.

03 주요 쟁점

공소기관	⇒	⇐	피고인(상소인)
본 사건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본 사건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라오모와 공모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다.			본 사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품을 생산하였으므로, 권리자에게 영업비밀 허가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			피고인이 상품을 생산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권리자에게 객관적 손해가 없다.

04 판결 요지

감정센터가 진행한 관련 67장의 설계도가 비공지 기술정보이고, 영업비밀에 속할 뿐만 아니라, 라오모의 컴퓨터에 있는 설계도와 관련 설계도를 대비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결론이므로 감정 결과는 합법 유효하며,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한다.

예명조우와 라오모는 공동으로 우씨 XX공사로 이직하여 일하였고,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예명조우는 라오모가 부정당한 수단으로 기술비밀을 획득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공동으로 기류기를 생산하였으므로, 비록 예명조우가 직접 관련 기계 설계도의 복제, 사용, 누설 등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침해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05 Key Point

중국의 영업비밀침해죄 관련 형사판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더구나, 본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판결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이다.

한국 영업비밀보호 법제도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형사 처벌규정이 들어있는데,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형법 제219조에서 '영업비밀침해죄'를 규정하고있다.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특히, 특허침해죄의 경우)의 범위가 제한적인데, 영업비밀침해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처벌의 범위가 제한적이지는 않다.